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8호 2009. 7. 15. (수)

【 조 례 】

- 정선군조례 제217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조례 제21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조례 제2172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조례 제2173호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조례 제2174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조례 제2175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정선군조례 제2176-20호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22
- 정선군조례 제2177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

【 규 칙 】

- 정선군규칙 제1153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정선군규칙 제115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32
- 정선군규칙 제1155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정선군규칙 제1156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7

【 훈 령 】

- 정선군훈령 제382호 정선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41

【 공 고 】

- 정선군공고 제2009-439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공고..... 42
- 정선군공고 제2009-446호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 예고..... 43
- 정선군공고 제2009-450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2차 공고..... 51
- 정선군공고 제2009-469호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53
- 정선군공고 제2009-476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54
- 정선군공고 제2009- 478호 분묘개장공고(1차)..... 55
- 정선군공고 제2009-482호 2009년 6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5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를 “자치행정과, 녹색정책과,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 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을 삭제한 다.

제3조제2항제3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녹색정책과장

-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
-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
-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제3조제2항제7호 중 “농정 및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 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을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행정기구 신설(제3조)
 - 자치행정과 다음에 “녹색정책과”를 신설함.
- 부서별 사무조정(제3조제2항)
 - 기획감사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사무를 녹색정책과로 이관함.
 - 녹색정책과에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분장함.
 - 산업경제과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을 녹색정책과로 이관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중전의 제3조) 및 제5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1·별표2·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5% 이내	33% 이내	23% 이내	9.5%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 이내	16% 이내	17% 이내	32% 이내	3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50% 이내	29% 이내	12% 이내	2%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4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433	-				
3급	-					
4급	3		3			
5급	24	2	10	2	1	9
6급이하 계	406	-				
별정직 계	1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12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				
연구사	1	-				
지도직 계	19	-				
지도관	2			2		
지도사	17	-				
기능직 계	98	-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유능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 집행기관 : 553명 (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 (현행과 같음)
-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 [별표1], [별표2]
- 직급별 비율조정에 따른 정원의 조정
 - 일반직 : 6급 증3명, 7급 증9명, 8급 △5명, 9급△7명
 - 기능직 : 기능6급 증1명, 기능7급 증6명, 기능8급 증3명, 기능10급 △10명
 - 연구·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 “현행유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2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을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 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 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 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 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제1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3호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투표조례” 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 을 “19세 이상”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 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주민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 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정 선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개 정 이 유

-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 국내거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제명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선군 주민 투표조례” 로 개정함.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 신설(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4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표 중 동면사무소 및 북면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5-3번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동면과 북면의 명칭이 각각 화암면과 여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동면사무소와 북면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동면사무소를 화암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정선군 동면 화암리 393-1번지”에서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로 변경
 - 북면사무소를 여량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정선군 북면 여량리 305-3번지”에서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5-3번지”로 변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5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제목 및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제23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이 법률 제9174호로 공포(2008.12.26) 및 시행(2009.4.27)됨에따라,
- 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 그간 ‘잡종재산’이란 명칭 사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며, ‘주인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
- 공유재산 분류 체계 단순화 필요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6-20호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

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6조에 규정한 심의를 거친 지원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주민 또는 유공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급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지원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함(제4조)
-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 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제5조)
-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조정하여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제6조)
- 심의를 거친 지원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7조)
-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후 30일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제8조)
-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조례 제2177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 범위)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사업,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사업 등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6. 기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자
4. 기타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수탁운영 포함)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복지관 운영 능력과 그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는 법인

제7조(위탁의 협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중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 위탁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 위탁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 시설에 투자나 재 투자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장비·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대여·전매·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 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관리) 군수는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받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 후 반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 (제2조)
 - 명칭 : 정선군종합사회복지회관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舊 농업기술센터)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규정함 (제4조)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제6조)
- 위탁 운영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 위탁 할 수 있음. (제8조)
-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규칙 제1153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산업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녹색정책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산업경제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를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조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에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제6조제82호 및 제9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학교급식 지원사업 총괄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녹색정책과) 녹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분권시책추진
2. 균형발전 시책 추진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4.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6.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7.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8. 연탄제조업 관리
9. 에너지 관리

- 10.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 11.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 12.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 13. 도시경관조성 사업
- 14.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 1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 16.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
- 17. 그 밖에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녹색성장 관련 사무

제10조제4호, 제25호 및 제1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3호, 제45호 및 제13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59호 및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리
- 25. 남평리 문화마을 관리
- 131.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 159. 한해대책용 양수기관리
- 160.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수급 지원

제12조제30호, 제31호, 제33호, 제34호, 제37호 및 제5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88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8호, 제20호, 제23호,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0.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행정기구의 신설 및 부서장의 직급 조정
 - 녹색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농업정책과장 : 지방행정·농업5급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행정5급 또는 지방농업5급
- 사무의 조정
 - 기획감사실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을 삭제함.
 - 주민생활지원실에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을 추가로 분장함.
 - 자치행정과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총괄”을 추가로 분장함.
 - 녹색정책과에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도시경관조성 사업”,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 “그밖에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녹색성장 관련 사무”를 분장함.
 - 농업정책과에 “한해대책용 양수시 관리”,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수급 지원”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소멸되었거나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기입된 사무 정리
 - 산업경제과의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무를 삭제함.
 - 건설도시과의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사무를 삭제함.
 -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을 추가로 분장하고, 농업정책과 사무와 중복 기입된 사무 정리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규칙 제115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유능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2명 (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 (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 (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7명 (현행과 같음)
 - 읍 면 : 178명 (현행과 같음)

○ 기구 신설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에 따른 정원 상계

<일반직>

- ① 행정6급 증2명 ↔ 행정8급 △2명
- ② 행정6급 증1명 ↔ 행정·시설8급 △1명
- ③ 행정7급 증5명 ↔ 행정8급 △2명, 행정9급 △3명
- ④ 세무7급 증1명 ↔ 세무9급 △1명
- ⑤ 사회복지7급 증1명 ↔ 사회복지9급 △1명
- ⑥ 시설7급 증1명 ↔ 시설9급 △1명
- ⑦ 간호·의료기술7급 증1명 ↔ 의료기술 9급 △1명

<기능직>

- ① 운전·기계6급 증1명 ↔ 기계10급 △1명
- ② 통신7급 증2명 ↔ 통신9급 △1명, 통신10급 △1명
- ③ 운전7급 증2명 ↔ 조무10급 △1명, 전산10급 △1명
- ④ 기계7급 증1명 ↔ 기계8급 △1명
- ⑤ 조무7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⑥ 조무8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⑦ 전기8급 증1명 ↔ 전기10급 △1명
- ⑧ 운전8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⑨ 전산8급 증1명 ↔ 워드10급 △1명
- ⑩ 조무9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직렬별 정원 조정

<일반직>

- ① 행정5급 증1명 ↔ 의무5급 △1명
- ② 행정·환경7급 증1명 ↔ 행정7급 △1명
- ③ 행정·농업7급 증1명 ↔ 농업7급 △1명
- ④ 시설7급 증1명 ↔ 통신7급 △1명
- ⑤ 통신8급 증1명 ↔ 시설8급 △1명
- ⑥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증3명 ↔ 농촌지도사 △3명

<기능직>

- ① 필기10급 증2명 ↔ 기계10급 △2명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규칙 제1155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제3조제4항, 제13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25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7호, 제3조제4항, 제26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9조제4항 중 “군유잡종재산”을 각각 “군유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이 법률 제9174호로 공포(2008.12.26) 및 시행(2009.4.27)됨에따라,
- 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일부개정하고,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 그간 ‘잡종재산’이란 명칭 사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며, ‘주인 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
- 공유재산 분류 체계 단순화 필요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7 . 14.

정선군규칙 제1156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신청) 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5조(경비부담)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수탁자의 회계)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구 성 원 수		계	임원	직원	기타
주요사업내용						
재 산 총 액 (천원)	기본재산			법인의 연간 수입액		
	계	목적용재산	수익용재 산	수 입 액		
				연평균 유역경비 부담가능액		
위탁대상시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수탁 목적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가.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한다) 각 1부

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최근 3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리. 향후 3년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미. 법인 재정부담 승락서(소정 양식) 1부

바.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시.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정선군수 귀하

제 정 이 유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수탁자 선정방법, 회계 및 직원 채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 요 내 용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제2조)
-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규정 (제3조)
 - 수탁자 선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수탁자 회계에 대한 규정 (제6조)
- 직원의 채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정선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7. 13.

정 선 군 수

정선군훈령 제382호

정선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기능직·연구직·지도직·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외직명) ①제2조에 따른 6급(상당)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담당명칭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

③업무특성상 제1항에 따른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사용) ①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군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상의 공직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 기념패, 명패 및 명함 등에는 직급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439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공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 내지 제9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해당시 1년 범위내에서 공사에 착수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 및 기간연장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처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 제7항 내지 제9항
3. 처분원인 : 공사 미착공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건축주	사업계획승인 규모 및 종별	용도	취소사유	승인번호 승인일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72번지외 2필지	(주)그레 이스종합 건설	지하1 지상 14층, 1동 ,59세대 연면적 7,650.04㎡	공동주택 (아파트)	공사 미착공	제2007-647호 2007.10.16.

5. 기타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560-2473

2009. 7. 3.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446호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7. 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취지**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의거 “질서위반행위”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개정 공포(2008.12.31.)되고 2009.4.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다. 우리 군에서 2006년 개정(2006.9.30.)한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보건소(전화 562-4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①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 ②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장 벌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19.]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2002.1.19. 2003.07.29.]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신설 2003.07.29.]
-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1999. 08. 20 조례 제1792호)

개정(2001. 06. 19 조례 제1867호)

개정(2006. 09. 30 조례 제20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서식] 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진술)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의견 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부개정 2006.09.3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근 거	부 과 금 액 (천원)		
		1차	2차	3차
1.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경고	1,500	3,000
2. 법 제9조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1,500	3,000
3.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경고	1,000	2,000
4.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경고	1,000	2,000
5.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경고	1,000	2,000

(주)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450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2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제1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활용방안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코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 7. 1.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09. 7. 1. ~ 2009. 9. 30.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834.4㎡
 -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 방문상담, 우편 등
 - 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나. 접 수
 - (1) 방 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2) 우 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240)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통보(순위별)

6. 특전

가. 활용방안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시 사업우선권자로 지정

나. 접근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지원

7.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 또는 매각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469호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9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3.

정 선 군 수

1. 설치목적

- 주요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설치내용

- 가. 설치내역 : 3개소/3대
- 나. 설치 예정지역

연 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1	지방도 415호(아우라지 삼거리↔구절리)	차량번호인식
2	임계면 골지리(골지삼거리)	차량번호인식
3	정선읍 봉양리 봉양초교앞	생활방법

3. 예고기간 : 2009년 7월 3일 ~ 2009년 7월 22일

4. 의견진술

-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7.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자치행정과, ☎560-2232)에게 서면제출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와 그 이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476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무허가영업)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위반업소 현황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김영국 (상호없음)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31 동양빌딩 8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허가 영업 및 등급미필게임물 제공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장 폐쇄
처 분 법 적 근 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의견 제출	제 출 처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033-560-2567)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우:233-800)

※ 2009.7.22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영업폐쇄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7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478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3-1 700-2	전	1	경계지점

2. 개장사유 :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신축부지 내 무연분묘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33-560-2314)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년 07월 10일

정 선 군 수

분 묘 조 서

일련번호	분묘의 소재지	분묘의 기수	용도구분	비고
계	2필지	1		
1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3-1 700-2	1기	묘지	경계 지점

정선군공고 제2009-48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임은자 등 14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106 (1/1) 등 14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9년 6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6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9년 8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정 선 군 수

2009년 6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우리 106 (1통1반)	임은자	건물 고함읍 고한리 127-27번지 건물 81.83㎡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취득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 563-4 703호 (29통1반)	김명경	토지 사북읍 사북리 산 94번지 9913.0000㎡ 매매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취득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49-42 장미빌라 301호 (18통5반)	권상택	토지 남면 문곡리 525번지 1870.4644㎡ 매매	이사감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43 (2통3반)	김선애	건물 여량면 구절리 2-17번지 건 물 37.82㎡	수령인없음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29-6 (3통2반)	현귀용	102431 2008년식 승용 sm5 신규 (축)	수령거부
등록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29-6 (3통2반)	현귀용	102431 2008년식 승용 sm5 신규 등록(일반승용)	수령거부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73 (1반)	나덕운	2006년도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04-37 (12통3반)	남도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세회 -9232.2009.04.20)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층 (3통5반)	김성윤	2008년12월귀속(황제) : 근로소 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층 (3통5반)	김성윤	2009년01월귀속(황제) : 근로소 득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23 (4통1반)	정연규	사북리 367-5(2007년분)존치시 기:06.10.17.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23 (4통1반)	정연규	사북리 367-5(2008년분)존치시 기:06.10.17.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층 (3통5반)	김성윤	80누2371(비영업용,적재정 량:10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9 (12통6반)	최숙자	93더9147(비영업용,적재정 량:800,2009.01.01~2009.04.12)	이사감